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교육특구의 지정·운영 등〉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89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입법 배경	3
(1) 교육발전특구 개요	3
(2)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현황	4
(3) 유사 입법례	6
2.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8
3. 조문의 구성체계	11
4. 주요 조문별 검토	12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12
(2)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14
(3) 교육특구의 지정신청·지정·변경·해제·성과관리(안 제5조부터 제9조 까지 및 제15조)	16
(4) 교육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22
(5) 규제 특례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26
가. 유치원·돌봄 관련 특례(제16조 및 제17조)	26
나. 초중등학교 설립·운영 및 교육과정 관련 특례(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28

다. 교원 임용 및 자격 관련 특례(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	32
라.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 특례(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37
마. 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안 제29조) ·····	40
바. 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안 제30조) ·····	42
(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31조) ·····	44
(7) 부칙 ·····	45
 【참고자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	 4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혁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9.
3. 회부연월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으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유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는 지방 공교육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특구의 지정과 운영, 교육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 실시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교육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육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특구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교육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 마. 교육특구에 학교와 유치원의 설립·운영, 학교 안전공제 적용, 교육과정, 농어촌학교, 지역교원, 교원자격, 협업교육, 산학겸임교사,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원 파견, 교원 추가 배정 및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1) 교육발전특구 개요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12.6.)에 따라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 동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전 단계에 걸쳐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목표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지역인재 유출 방지
	↓	↓	↓
추진 방향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 유보통합 시범운영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 지역 인재 선발·양성
	↓	↓	↓
성과 지표	· 출산율 상승	· 학업성취도 상승 · 사교육비 감소	·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자료 : 교육부)

또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타 특구와 연계를 강화하며, 교육개혁과제(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전환 등)를 우선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특례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¹⁾.

(2)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현황

□ 교육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원칙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및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2024년 2월 1차로 31개 특구, 7월 2차로 25개 특구, 2025년 7월 예비지역 추가 지정으로 8개 특구를 지정하여 총 64개 교육발전특구에 7개 광역지자체 및 94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

[교육발전특구 유형별 신청단위 및 주체]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자료 : 교육부)

1)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12.6.)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현황]

유형	신청 단위	1차('24. 2월)	2차('24. 8월)	예비지역 추가 지정('25. 7월)	계
1 유형	기초 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21건 (21개 기초 지자체)	7건 (7개 기초 지자체)	48건 (49개 기초 지자체)
2 유형	광역 지자체	6건 (6개 광역 지자체)	1건 (1개 광역 지자체)	-	7건 (7개 광역지자체)
3 유형	광역지 자체가 지정하 는 기초 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3건 (3개 광역, 19개 기초지자체)	1건 (1개 광역, 4개 기초지자체)	9건 (9개 광역, 45개 기초지자체)
계		31건	25건	8건	64건

(자료 : 교육부)

□ 교육부는 2024년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²⁾, 지정된 특구당 30~100억원 상당을 재정 지원하고 있고 2024년에 1,892억원, 2025년에 3,008억원('25년 10월 말 기준) 등 2년간 총 4,900억원을 교부하였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부산	30,465	33,000	63,465
대구	21,444	20,200	41,644
인천	3,300	3,000	6,300
광주	11,000	11,000	22,000
대전	10,070	10,000	20,070
울산	3,028	5,271	8,299

2)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해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부대의견(“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다.”)을 근거로 들고 있음.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금액으로, 교부대상은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시·도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임.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세종	126	3,000	3,126
경기	7,451	21,125	28,576
강원	18,451	29,137	47,588
충북	4,213	13,785	17,998
충남	9,100	11,860	20,960
전북	15,560	34,810	50,370
전남	4,877	24,144	29,021
경북	29,652	38,158	67,810
경남	13,866	35,713	49,579
제주	6,600	6,600	13,200
합계	189,203	300,802	490,005

(자료 : 교육부)

(3) 유사 입법례

-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도심융합특구, 평화경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이 각각 근거법률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도 교육국제화 특구³⁾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교육발전특구 운영 현황]

구분	소관부처	근거법률
기회발전특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평화경제특구	통일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도심융합특구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임(근거법률 제2조)

- 교육분야 특례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등을, 도심융합특구에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을,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를, 혁신도시에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분야 특례 현황]

법률명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2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가 심각한 실정임. 특히 지역의 교육 및 거주 여건 부족으로 우수 인재 양성 및 유치가 어려워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에 지정된 경우 학교설립, 교원임용 및 배치, 교육과정 등의 특례 적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교육 및 거주환경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례 적용을 통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교육부는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⁴⁾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해당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지원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⁵⁾⁶⁾.

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참고(p.46)

5) 이와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시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한 바 있음.

6) 교육부는 시범사업 이후 본격적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발전특구는 각종 법적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별 맞춤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 혁신 및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임. 이와 관련 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3건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법안 심사 시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음.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전의원대표발의, 2206874),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 다만, 제정안은 교육특구에 지정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특례 적용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학교설립 및 교육과정 예외 적용, 교원 및 직원의 추가배치 및 교원 자격 완화 등의 특례 등으로 교육제도의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 저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특례 적용 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대책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제정안의 규정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우선, 제정안의 ‘교육특구위원회’는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 협의, 자문 등으로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보이는데, 해당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는 위원회인지 ‘심의’하는 위원회인지 보다 명확히 그 성격과 기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특구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해제 사유 발생 시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의 직권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정안은 특구 운영 성과평가를 임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205895),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2213064)

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에 관한 의무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 외 제정안의 ‘교원 간의 교차지도’, ‘지역교원’에 관한 특례는 통합 학교 등 다양한 학교 운영과 교사 수급정책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되나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제정안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을 통해 지역 교육을 혁신한다는 현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목적과 유사하므로, 제정안의 교육특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조문의 구성체계

- ☐ 제정안의 법률 제명은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으로, 본칙 31개(총칙, 교육특구의 지정 및 운영, 규제 특례, 보칙)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 구성>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 본칙(31개 조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교육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5조(교육특구의 지정 신청)	제6조(교육특구의 지정)
제7조(교육특구의 지정 효과 등)	제8조(교육특구의 변경)
제9조(교육특구의 해제)	제10조(교육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2조(교육특구 전담기관 등)
제13조(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교육특구별 전담조직)
제15조(교육특구운영의 성과관리)	
제3장 규제특례	
제16조(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7조(학교 안전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9조(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20조(교육과정의 특례)	제21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제22조(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제23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제24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제25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제26조(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제27조(전문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제28조(교원 추가배치에 관한 특례)	제29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특구”란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 제정안 제1조는 교육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법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의 교육특구 지정 및 운영의 필요성이나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및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목적조항으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교육특구”, “규제특례”, “수도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사용빈도가 높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⁷⁾. 제정안의 교육특구 및 규제특례은 이 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규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7)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244

(2)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특구에 특례 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정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특구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교육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유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체적·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을 마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바⁸⁾⁹⁾, 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8)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257

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4조는 교육특구에 특례 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률을 다른 관련 법률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해당 법률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¹⁰⁾.

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관련 법률들보다 제정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¹¹⁾.

10)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258

1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교육특구의 지정신청·지정·변경·해제·성과관리(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

제 정 안
제5조(교육특구의 지정 신청) ① 교육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와 교육감 2.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교육감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②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교육특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특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교육특구 내 대학 및 기업 등 3. 교육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4. 그 밖에 교육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의 지정 절차와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6조에 따라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공동으로 교육특구 사업운영계획(이하 “교육특구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특구의 변경)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이나 교육특구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 및 교육특구 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특구의 해제) ① 교육특구의 유효기간은 교육특구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교육특구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②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특구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교육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해당 교육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육특구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정 안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특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특구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해제의 조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특구운영의 성과관리)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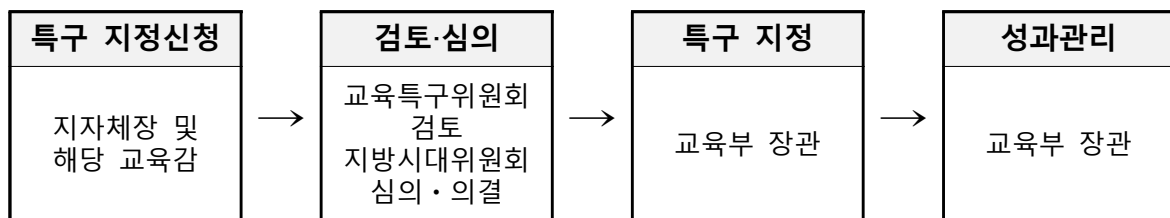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평가의 방법, 개선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안 제5조부터 제9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수도권 제외지역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¹²⁾과 해당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

12) 제정안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하고 있음.

는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교육특구 지정 절차]



□ 제정안들은 특구의 지정신청·지정·변경·해제·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제정안은 특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 시 교육특구위원회 사전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¹³⁾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지역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의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은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특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안 제10조) 이에 더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특구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해제 사유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지정 해제 사유 중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육특구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지정 해제 신청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데 특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교육부장관의 직권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
-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3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변경지정된 도심융합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등의 의견 청취 및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화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2. 해당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3. 특화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다음으로, 제정안은 특구 운영 성과평가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구 관련 타 입법례와 같이 성과평가에 관한 의무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그 외 제정안은 특구 지정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구의 지정·운영은 해당 지역 교육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직접 이용자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바 적절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보임¹⁶⁾.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④ 시·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교육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제 정 안

제10조(교육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이하 “교육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교육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교육특구 협약 및 교육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신청한 규제특례의 부여·변경·취소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교육특구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그 밖에 교육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그 밖에 교육특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관련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교육특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 사무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특구 전담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실행, 지역별 사업 운영 상황의 점검·조정, 전국단위 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성과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특구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특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교육특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둔다.

제 정 안
② 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특구 협약안 작성 2. 교육특구 협약기관 간 연계·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3. 교육특구 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4. 그 밖에 교육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③ 지역협의체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둔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의 일부를 지역협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특구별 전담조직) ① 교육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특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정안은(제10조부터 제14조)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특구 관련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 특구 전담기관, 지역 협의체, 특구별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특구위원회는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특구 협약 및 교육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 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구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교육특구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취지로 특구 관련 업무의 사무처리기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교육특구위원회는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 협의, 자문 등으로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보이는데, 해당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는 위원회인지 ‘심의’하는 위원회인지 보다 명확히 그 성격과 기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문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특구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¹⁷⁾.

- 행정안전부는 교육특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 전 특구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활용하거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무국’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는 의견임.

또한, 교육특구 전담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직제)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¹⁸⁾가 유관 업무 수행 중이므로 별도의 전담기관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1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학교정책실)⑪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교육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5) 규제 특례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가. 유치원·돌봄 관련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제 정 안
제16조(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 기준을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협약기관이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학교 안전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 지정 지역 내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 외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늘봄학교(초등 방과 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정안 제16조는 특구 지역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¹⁹⁾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설립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²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특구 내 협약기관이

19)「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③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과정 등)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7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²¹⁾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 외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늘봄학교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현행법 상 유치원 설립기준 및 교육과정, 늘봄학교 이용 학생의 안전 보장 조치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인구 지역 정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제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안 제16조제3항)은 교육특구 내 협약기관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협약기관’의 의미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 외 개정안(안 제16조제2항)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례에 대한 인용 규정은 현행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²²⁾을 인용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④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나. 초중등학교 설립·운영 및 교육과정 관련 특례(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 정 안
제18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제2항 및 제29조를 제외하고 같다) 설립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교육감은 교육특구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특구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 ②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21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입학 등을 지원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정안 제18조는 특구 지역에서 학교의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²³⁾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²⁴⁾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수업,

23)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4)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학년제, 교과용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19조는 특구 지역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교원 임용 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20조는 특구 지역에서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21조는 특구 지역에서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 병설 또는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제정안은 현행법 상 초·중등학교 설립기준 및 교육과정 등의 규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구 지역 학교에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국제공인교육과정 운영,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 농어촌학교 전·입학 허용 및 특수학교 설치 등을 하려는 것으로,

지역 수요 및 상황에 따른 교육환경 제공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 수요에 맞는 특례 적용의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학교설립 기준, 교육과정 운영 등이 달라질 경우 교육제도의 일관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는 없는지,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에서 학교설립, 교육과정 운영 및 전입학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²⁵⁾.

25)「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

다. 교원 임용 및 자격 관련 특례(안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28조)

제 정 안
제22조(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 지역 혹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한 교원(이하 “지역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지역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양성 및 검정·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원의 자격요건,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교원의 양성 및 자격, 임용,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공모를 통하여 선발되는 교장의 자격기준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등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중등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와 협약기관 전문가의 공동수업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교원 추가배치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역교육 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교육특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제정안 제22조는 특구 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역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지역교원에 대한 전보제한, 특별수당 지급, 지역교원 자격 신설·양성 및 검정·수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 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 통합적 운영 및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23조는 특구 지역 학교의 장의 자격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²⁶⁾에 따른 공모를 통하여 선발되는 교장의 자격기준 범

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학교의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24조는 특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9조²⁷⁾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28조는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역교육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교육특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은 현행법상 교원 및 공무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²⁸⁾, 수당기

2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교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7)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8)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시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

준²⁹⁾, 교원의 자격기준³⁰⁾을 특구 내의 학교운영 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우수 교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원이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사 수급정책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제정안의 교원 간의 ‘교차지도’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서로 다른 학교급의 교원이 해당 학교급 학생을 넘어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현행법상 교원 자격증이 학교급별로 구분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합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원 자격의 유연화를 통한 교차지도 허용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특구 내 교원 자격 완화, 교원 및 직원의 추가배치 등은 교원 자격증에 대한 법적 안정성·형평성, 교원 배치 원칙과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교원 간의 교차지도는 통합운영학교 등 다양한 학교 운영을

을 둘 수 있다.

29)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30)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되나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³¹⁾.

- 교육부는 공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교원자격은 국가적으로 양성·관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의 양성 및 자격, 임용, 연수 등은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므로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교육과정 통합운영은 공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종별, 지도과목 등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의 별도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특별수당 지급은 타 교육청 소속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 특례(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 정 안
제25조(산학점임교사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역사회 및 산업체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점임교사 대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산학점임교사의 종류 및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점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특구 내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 ④ 교육특구의 교육감은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점임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원 확보를 위하여 공립·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전문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사로서 자질을 평가받은 자 2.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교원

□ 제정안 제25조는 특구 지역 학교의 산학점임교사의 종류, 자격 기준 및 대체비율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2항³²⁾에도 불구하고 교

3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점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점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점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소재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임직원은 특구 내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산학겸임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26조는 특구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원 확보를 위하여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27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교원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은 특구 지역 내 학교의 산학겸임교사 자격 기준 완화, 직업계 고등학교 교원 자격 기준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전문가 등의 활용 등을 통해 교사수급정책의 유연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산학겸임교사 대체비율³³⁾ 및 자격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로 정한다.

3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안정적 학교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중등 교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직업계고의 전문교원은 학생 수요, 학과 편성, 학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형태가 아닌 정식 정원으로 산정·배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자격 기준 완화는 교육의 질, 객관성·공정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마. 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안 제29조)

제 정 안
제29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며, 그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 2. 완화된 교사 면적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체 학습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가 산학협력 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사시설의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특구 내의 범위에서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정안 제29조는 특구 지역의 대학교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³⁴⁾에도 불구하고 교사시설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에 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³⁵⁾

34)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

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현행법 상 대학의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의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산업 관련 캠퍼스 조성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산업체 내에서
산학협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다문화 및 외국
어 교육을 통해 지역의 교육여건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
임.

□ 교육부는 산학협력 교육을 위해 학교 밖 수업 유형은 ‘이동수업’이
아닌 ‘협동수업’이며, 대학의 협동수업은 고등교육법령³⁶⁾ 및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36)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수업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이동수업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

바. 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안 제30조)

제 정 안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교육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교육특구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교육특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 제정안 제3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은 특구 내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해당 지역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가능하도록 하여 특구 내 교육 인프라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국유재산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매각·대부 등은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외교·국방상의 사유가 있거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점³⁷⁾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특구 내 학교의 신·증설 사업의 공익성, 타 입법례 등에 비추어 국유재산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³⁸⁾.

37)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4의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6)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20조)

제 정 안
제31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교육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정안 제31조는 교육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³⁹⁾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형벌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교육특구 지정·운영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39)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7)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안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에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둠⁴⁰⁾.

이에 비추어 제정안에 따라 교육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종료 후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그 시기에 맞추어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85

40)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

[참고자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 7개 광역지자체 및 94개 기초지자체

유형	신청단위	1차지정	지자체명	2차지정 (추가지정 포함)	지자체명
1 유 형	기초 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 (인천) 강화 -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 (강원) 춘천, 화천, 원주 -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 (충남) 서산 -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 (전남) 광양	28건 (28개 기초 지자체)	-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홍천 - (충북) 보은, 증평, 청주, 영동 - (충남) 공주, 금산 - (전남) 순천 -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주, 문경 - (경남) 남해, 통영
2 유 형	광역 지자체	6건 (6개 광역지자체 전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1건 (1개 광역 지자체)	- 세종
3 유 형	광역지 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 충남 (아산) - 경북 (안동-예천) -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4건 (3개 광역 지자체, 23개 기초지자체)	-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 전남(추가지정) (고흥, 보성, 완도, 진도)
계		31건		33건	